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79

발의연월일: 2025. 3. 20.

발 의 자:오세희·김동아·임호선

강준현 • 박희승 • 전진숙

허성무 · 강득구 · 장철민

조정식 · 조인철 · 정진욱

김태선 • 민병덕 • 안태준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용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대부분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의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는 없어 업무상 취득한 비밀누설 금지 규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위반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

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참고하여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되,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 등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확인하도록 하며,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을 보호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의6부터 제40조의8까지 신설).

법률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 2.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
- ⑥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5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0조의5제3항 전단 중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를 "영업비밀 에"로 한다.

제40조의6을 제40조의9로 하고, 제40조의6부터 제4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6(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가(이하 "지정전문가"라한다)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의 장소에출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복사, 장치의 작동・계측・실험 등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1. 상대방 당사자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
- 2. 조사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할 것
- 3. 당사자가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그 조사의 대상, 범위, 방법, 절차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와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이 법률 자문 또는 소송의 준비·수행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비공개 정보 또는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조사의 대상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지정전문가로 할 수 있다.
-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술심리관 또는 제54조의3에 따른 조사관
-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④ 지정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다른 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다.
- ⑤ 법원은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4항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는 조사의 대상・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 및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경우 그 내

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 ⑥ 법원은 제5항 후단에 따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정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제25조제2항 위반에 따른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조사의 목적 내에서 조사결 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사람은 열람한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을 다른 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하고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 ⑨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제1항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 ①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조사 명령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기간·비용 및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40조의7(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40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 송에서 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제4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이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을 포함한다)이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 두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 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 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 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 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 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40조·제40조의5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 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 요가 있다는 것

-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 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40조의8(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조제3항제4호 중 "제40조의5제7항"을 "제40조의5제7항, 제40조의6

제4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7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 령을 위반한 자
- 6. 제40조의8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43조제2항제1호 중 "제40조"를 "제40조 또는 제40조의6제9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의6 및 제40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가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 ④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
	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요구
	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u>다만,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u>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
	<u>忌</u>
	2.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
<u><신 설></u>	⑥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제5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
	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
	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⑦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① ·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①

- 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u>영업비밀(「부정경쟁) 생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u>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显7	가 {	<u></u> 는하	의	증	명	또	는	<u>손</u>	해	<u>액</u>
의	산	정어	ו (반드	크	7	필요	나하	다	고
법의	원이	Ų	난단	하는	=	경	우	중	소	벤
<u>처</u> 기	기업	부기	장관	은	_	L	자 j	료를	<u>!</u>	제
<u>출</u>	하여	야	한1	다	०]	경	우	법	원	은
제출	출요	구의	븨	목건	덕	내	에거	\	열	람
<u>할</u>	수	있	는	범	위	또	는	열	람	<u>할</u>
<u>수</u>	있	= /	사림	計을	ス	정	하	ं वि	ŧ	한
<u>다.</u>										

② (현행과 같음)
3
<u>영업비밀에</u>
<u>.</u>

④ ~ ⑧ (생 략) <신 설>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0조의6(전문가에 의한 사실조 사)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에 따라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 정된 전문가(이하 "지정전문가" 라 한다)로 하여금 상대방 당 사자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 의 장소에 출입하여 상대방 당 사자 및 그 직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질문하 거나 자료의 열람 보사, 장치 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 필요 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가 제25조제2 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 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 2. 조사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

중하지 아니할 것

- 3. 당사자가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그조사의 대상, 범위, 방법, 절차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와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이법률 자문 또는 소송의 준비·수행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비공개 정보 또는 자료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조사의 대상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지정전문가로 할 수 있 다.
-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에따른 기술심리관 또는 제54조의3에 따른 조사관
-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④ 지정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지정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법원은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4항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우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는 조사의 대상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 및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5항 후단에 따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정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제25조제2항 위반에 따른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조사의 목적 내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사람은 열람한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을 다른 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 인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 보고서를 열람하고 증거로 신 청할 수 있다.
- ⑨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신 설>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조 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1항에 따른 상대방 당사 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대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조사 명령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 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 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 할 수 없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기간·비용 및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의7(비밀유지명령) ① 법원 은 제40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제40조제5항제2호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한 다)이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결 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 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 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 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 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 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 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 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 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 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 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 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 제40조·제40조의5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 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사실
-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

<신 설>

<u>제40조의6(</u>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 략)

제41조(벌칙)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달하여야 한다.

-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 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 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조의8(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현행 제40조의6과 같음) 제41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3	 	 	

- 1. ~ 3. (생 략)
- 4. 제40조의5제7항을 위반하여 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 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신 설>

<신 설>

제43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 1. 제40조 또는 제40조의6제9항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생략)
- ③ ~ ⑤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40조의5제7항, 제40조의6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 제4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7 항 후단-----

- 5.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 이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비 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 6. 제40조의8에 따른 비밀엄수 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2

- 2.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